

서울특별시 중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중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11월 12일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1. 제안이유

중구의 관광홍보 정책을 통합적·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중구 의료관광 활성화 조례」의 폐지에 따른 관련 조항을 흡수 반영하고, 도시 전반의 관광산업으로 영역을 확대하여 관광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관광진흥을 위한 사업 추진 영역을 확장함(안 제5조)
- 홍보활동 경비나 경품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안 제6조)
- 외국인 관광산업 영역을 의료·패션·미식 등의 영역으로 확장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추진 근거를 마련함. (안 제1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16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에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39길 40(을지로6가 18-14) 의회사무과
- 전화 : 02)3396-8166 팩스 : 02)3396-9055
- E-mail : moonsun1004@junggu.seoul.kr

서울특별시 중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손 주 하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	--

발의년월일 : 2025년 11월 일

발 의 자 : 손주하 의원 외 5인

(소재권의원, 양은미의원, 조미정의원,
송재천의원, 윤판오의원)

1. 제안이유

중구의 관광홍보 정책을 통합적·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중구 의료관광 활성화 조례」의 폐지에 따른 관련 조항을 흡수 반영하고, 도시 전반의 관광산업으로 영역을 확대하여 관광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관광진흥을 위한 사업 추진 영역을 확장함(안 제5조)

나. 홍보활동 경비나 경품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안 제6조)

다. 외국인 관광산업 영역을 의료·패션·미식 등의 영역으로 확장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추진 근거를 마련함. (안 제1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관광진흥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 . . ~ . . .)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또는 별첨

4. 조 례 안 : 붙임

서울특별시 중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호 중 “**설명회·박람회**”를 “**설명회·박람회 개최 및**”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호(중전의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관광지 홍보를 위한 인쇄물·기념품·영상물 제작 및 배포
5. 관광객 유치, 관광홍보, 관광자원 개발을 위한 공모전 등 관광 진흥을 위한 행사 개최
6.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제1항 중 “**제4조**”를 “**제5조**”로, “**관광사업자 단체**”를 “**관광 관련 법인, 단체**”로, “**관광사업자에게**”를 “**개인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을 “**제2항제2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관광진흥사업 추진에 따른 시상금, 기념품, 상품권 등 경품의 제공

④ 제2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제공할 수 있다.

1. 소셜미디어를 활용하거나 공모전 등 활동으로 관광 홍보에 참여한 자
2. 국내·외 관광 설명회, 박람회, 관광 행사 등 관련 이벤트에

참석한 자 및 관광 분야 관계자

3. 그 밖에 구청장이 관광객 유치 및 관광자원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5조제1항”을 “제6조제1항”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제4조”를 “제5조”로 한다.

제10조제1항 전단 중 “제7조제3항”을 “제9조제3항”으로 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외국인 의료관광 등 활성화) ① 구청장은 외국인 의료·패션·미식 등 관광 활성화를 위해 우수한 전문기술과 다양한 관광정보를 홍보하고, 관광상품을 해외마케팅 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의료관광 등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협력기관이나 관련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내·외 홍보마케팅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2. 상품개발에 필요한 경비
3. 관광객 유치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비
4.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관광진흥사업) 구청장은 지역의 관광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	제5조(관광진흥사업) ----- ----- -----.

다.

1. (생략)

2. 설명회·박람회 홍보 지원

3. (생략)

4. 관광지 홍보를 위한 인쇄물
· 기념품·영상물 제작 및 배
포

<신설>

5.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사업

제6조(관광진흥사업 지원) ① 구
청장은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거나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관광사업
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
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적·재정
적 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행과 같음)

2. 설명회·박람회 개최 및 ---

3. (현행과 같음)

4. 관광지 홍보를 위한 인쇄물
· 기념품·영상물 제작 및 배
포

5. 관광객 유치, 관광홍보, 관광
자원 개발을 위한 공모전 등
관광진흥을 위한 행사 개최

6.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사업

제6조(관광진흥사업 지원) ① ---
---- 제5조 -----

----- 관광 관련 법인, 단
체 -- 개인에게 -----

-----.

② -----
-----.

1.·2. (생략)

<신설>

3. (생략)

③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보조금 지급방법과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1.·2. (현행과 같음)

3. 관광진흥사업 추진에 따른 시상금, 기념품, 상품권 등 경품의 제공

4. (현행 제3호와 같음)

③ 제2항제2호-----

--.

④ 제2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제공할 수 있다.

1. 소셜미디어를 활용하거나 공모전 등 활동으로 관광홍보에 참여한 자

2. 국내·외 관광 설명회, 박람회, 관광 행사 등 관련 이벤트에 참석한 자 및 관광 분야 관계자

3. 그 밖에 구청장이 관광객 유치 및 관광자원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지원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 3. (생략)

제8조(관광진흥 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관광진흥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광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단체, 법인 또는 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생략)

제10조(관광안내소의 관리 위탁) ① 구청장은 안내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안내소의 관리 또는 제7조제3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운영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생략)

<신설>

제7조(지원 제외) -----
----- 제6
조제1항-----.

1. ~ 3. (현행과 같음)

제8조(관광진흥 업무의 위탁) ① -----
----- 제5조 -----

-----.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관광안내소의 관리 위탁) ① -----
----- 제9
조제3항 -----

-----.

② (현행과 같음)

제18조(외국인 의료관광 등 활성화

화) ① 구청장은 외국인 의료·패션·미식 등 관광 활성화를 위해 우수한 전문기술과 다양한 관광정보를 홍보하고, 관광상품을 해외마케팅 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의료관광 등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협력기관이나 관련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내·외 홍보마케팅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2. 상품개발에 필요한 경비
3. 관광객 유치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비
4.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